

# 2010會計年度 決算檢査意見書

- 수 신 : 부천시장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査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査기간 : 2011. 6. 1. ~ 6. 20. (20일간)
- 검査위원
  - ◆ 대표위원 : 나 득 수 (부천시의회 의원)
  - ◆ 위 원 : 박 철 수 (전직공무원)
  - ◆ 위 원 : 김 봉 권 (회계사)
  - ◆ 위 원 : 소 윤 석 (세무사)
  - ◆ 위 원 : 안 병 선 (세무사)

富川市 決算檢査委員



# 목 차

I. 결산검사의견서	.....	3
II. 결산검사경과	.....	6
III. 총 평	.....	7
IV.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석	.....	9
V. 회계별 결산	.....	12
1. 일반회계	.....	12
2. 특별회계	.....	20
VI. 예비비 결산	.....	22
VII. 기금 결산	.....	23
VIII. 채권 결산	.....	25
IX. 채무 결산	.....	26
X.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27
XI.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7
XII. 개선 및 권고사항	.....	31
1. 세입분야	.....	31
2. 세출분야	.....	43



# I . 결산검사의견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감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검사기간 : 2011. 6. 1. ~ 6. 20.(20일간)

2. 감사위원 : 5명

- 대표위원 : 나득수(부천시의회 의원)
- 위 원 : 박철수(전직공무원)
- 위 원 : 김봉권(회계사)
- 위 원 : 소윤석(세무사)
- 위 원 : 안병선(세무사)

3. 감사항목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 기타

4. 검사장소 : 시청 및 구청(동 주민센터 포함) 결산검사장

붙 임 : 결산검사 의견서 1부.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부천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 일동은 지방자치법 제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채권, 채무, 물품 및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준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아울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도 검사활동에 포함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부천시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일부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개선 권고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다음연도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 전원은 금번 결산검사시에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엄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의 2010회계연도 결산이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2011년 6월 20일

2010회계연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나 득 수



위원 박 철 수



위원 김 봉 권



위원 소 윤 석



위원 안 병 선



## II. 결산검사경과

1. 검사기간 : 2011. 6. 1. ~ 6. 20.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나 득 수	결산검사 총괄	부천시의회 의원
위 원	박 철 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검사	전직공무원
위 원	김 봉 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검사	회계사
위 원	소 윤 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사	세무사
위 원	안 병 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사	세무사

3. 결산검사 세부 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부천시의회	6. 1.(수)	결산검사일정 협의 및 현황과약	
각 구청 (동주민센터포함)	6. 2.(목) ~6. 7.(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본청 및 사업소	6. 8.(수)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소과, 회계과, 세정과(세입)	
	6. 9.(목)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세정과(세입)	
	6.10.(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식품안전과, 세정과(세입)	
	6.13.(월)	도시계획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도시디자인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세정과(세입)	
	6.14.(화)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차량관리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세정과(세입)	
	6.15.(수)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세정과(세입)	
	6.16.(목)	뉴타운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기반시설과, 시립도서관, 세정과(세입)	
	6.17.(금)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회사무국 세정과(세입)	
결산검사장	6.17.(금) ~ 6.20.(월)	지적사항 검토 및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진행

- 대표위원 책임하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2개조로 분류 검사 실시
- 결산검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에 현지 확인 검사를 병행 실시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의 협의를 거쳐 의견조정
- 의문이 있거나 위법성 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 Ⅲ. 총 평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마감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집대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원시증빙에서부터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상황을 분석하여 재정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정책 지원 및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0년 부천시 결산검사는 시·구·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세입·세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의 합목적성, 건전성 및 효율성 그리고 시 재정의 중장기적 제고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총괄 결산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재정규모는 9.57% (△149,940백만원), 세입액은 8.99%(△144,084백만원), 세출액은 13.01%(△159,794백만원)로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14%(13,218백만원), 체납액은 4.83%(6,092백만원)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와 2010년도 비율 증감을 보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는 5.71% 증가에서 9.57% 감소, 세입액은 2.53% 증가에서 8.99% 감소, 세출액은 13.82% 증가에서 13.01% 감소, 순세계잉여금은 20.77% 감소에서 6.14% 증가, 체납액은 4.73% 증가에서 4.83% 추가 증가하였습니다. 위 비율증감을 분석하면 재정규모, 세입, 세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입의 감소보다 세출의 감소가 훨씬 큰 것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확연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징수노력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 보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로 초과 세수가 41,487백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초과세수가 5,856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물론 예산대비 세수미달보다는 낫겠지만 정부회계가 예산회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앞서 비율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예비비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33.64%(29,031백만원) 증가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집행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의 본질에 역행 하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부천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로 인해 민간 보조금 내지 위탁금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탁금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므로 향후 위탁금의 축소 내지는 사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각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세입의 증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고 재정 자립도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불필요한 세출증가를 줄이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수립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IV.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석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12개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10년	1,416,751	1,458,238	1,068,054	390,184
2009년	1,566,691	1,602,322	1,227,848	374,474
2008년	1,482,049	1,562,743	1,078,740	484,003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이 월 액				집행잔액		초과세수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시 비 집행잔액		
2010년	119,720	20,806	2,955	95,959	41,934	187,043	41,487	228,530
2009년	151,506	32,218	8,964	110,324 (10,000)	7,655	179,682	35,631	215,313
2008년	207,654	28,299	12,309	167,046	4,598	191,057	80,694	271,751

※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수 + 시비 사용잔액 + 자금없는 이월액

### 1. 총괄 결산 분석

#### □ 예산현액

- 2009년 대비하여 9.57%(149,940백만원) 감소 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인 5.71% (84,642백만원)에 비하여는 15.28% (65,29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 세입결산액

- 2009년 대비하여 8.99%(144,08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인 2.53% (39,579백만원)에 비하여는 11.52%(104,50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 세출결산액

- 2009년 대비하여 13%(159,974백만원) 감소 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인 13.82% (149,108백만원)에 비하여는 26.82%(10,68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4.20%(15,71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14%(13,21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인 세계잉여금은 22.63%(109,52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77%(56,438백만원)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체납액

- 2009년은 4.73%(5,693백만원), 2010년은 4.83%(6,092백만원)로 전년 대비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징수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 2. 세입결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을 검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세수
2010년	1,416,751	1,608,874	1,458,238	18,436	132,200	41,487
2009년	1,566,691	1,739,225	1,602,322	10,796	126,106	35,631
2008년	1,482,049	1,696,635	1,562,743	13,479	120,413	80,694

※ 미수납액(다음년도 이월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초과세수 = 예산현액 - 수납액

□ 검사분석

-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192,123백만원 초과징수 결정되어 오차비율이 13.56%이며, 2009년 초과징수 결정액 172,534백만원의 오차비율 11.01%에 비하여 2.55%(19,589백만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이 90.64%로 2009년 92.13%보다 1.49% 감소하여 수납액 제고에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 불납결손액의 결손비율은 1.15%로 2009년 0.62%에 비해 0.53%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또한 4.83% 증가한 바 불납결손액 감소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미수납액이 축소 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 초과세수는 예산현액 대 수납액과의 차이로 그 비율이 2010년 102.93%, 2009년 102.27%, 2008년 105.44%로 초과세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세출 결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출결산을 검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0년	1,416,751	1,068,054 (75.4%)	119,720 (8.45%)	20,806	2,955	95,959	228,977 (16.1%)
2009년	1,566,691	1,227,848 (78.4%)	161,506 (10.3%)	32,218	8,964	120,324 (10,000)	177,337 (11.3%)
2008년	1,482,049	1,078,740 (72.8%)	207,654 (14.0%)	28,299	12,309	167,046	195,655 (13.2%)

#### □ 검사분석

- 예산액은 1,255,245백만원이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161,50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16,75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570백만원으로 전용의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23건입니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1%에 해당하는 228,977백만원으로 전년도 11.3%보다 증가 하였으며, 고액 불용액은 일반회계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불용액 1,102백만원과 특별회계의 도시철도사업 불용액 58,182백만원입니다.
-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27.5%인 390,184백만원으로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53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15,313백만원 보다는 13,21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4%에 해당하는 1,068,054백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45%에 해당하는 119,720백만원으로 명시이월 20,806백만원, 사고이월 2,955백만원, 계속비이월 95,959백만원이며, 그 주요사업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공사,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건립, 수목원조성, 계수대로 개설공사 등 장기 계속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 V. 회계별 결산

### 1. 일반회계

#### 가. 세입결산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비 고
합 계	963,301	1,095,777	981,636	17,643	96,498	18,335	
지방세	281,068	347,422	293,190	16,308	37,924	12,122	
세 외 수 입	소 계	256,638	312,855	252,946	1,335	58,574	△3,692
	경상적수입	42,220	42,516	42,285	-	231	65
	임시적수입	214,418	270,339	210,661	1,335	58,343	△3,757
지방교부세	95,080	97,811	97,811	-	-	2,731	
조정교부금등	76,731	83,890	83,890	-	-	7,159	
보 조 금	234,784	234,799	234,799	-	-	15	
지 방 채	19,000	19,000	19,000	-	-	-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비 고
합 계	1,105,053	1,214,853	1,112,790	10,223	91,840	7,738	
지방세	273,300	337,681	286,932	9,965	40,783	13,633	
세 외 수 입	소 계	386,253	438,298	386,984	258	51,057	731
	경상적수입	46,197	45,303	44,956	2	346	△1,241
	임시적수입	340,056	392,995	342,028	256	50,711	1,972
지방교부세	89,513	91,151	91,151	0	0	1,638	
조정교부금등	68,551	69,952	69,952	0	0	1,401	
보 조 금	252,836	253,171	253,171	0	0	335	
지 방 채	34,600	24,600	24,600	0	0	△10,000	

## (1) 총괄 검사 분석

### □ 지방세

- 2009년 대비하여 예산현액은 2.85%(7,768백만원), 수납액은 2.19%(6,258백만원), 불납결손액은 63.66%(6,343백만원)가 증가하였고 반면 미수납액은 32.98%(2,859백만원)가 감소하였습니다.

### □ 세외수입

- 2009년 대비하여 예산현액은 33.56%(129,615백만원), 수납액은 34.64%(134,038백만원)가 감소한 반면 불납결손액은 417.45%(1,077백만원), 미수납액은 14.72%(7,516백만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 교부세 등

- 2009년 대비하여 예산현액은 4.47%(19,905백만원), 수납액 0.77%(3,374백만원) 감소한 반면 초과세입은 249.49%(16,531백만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2)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2010년	963,301	1,095,777	981,636	17,643	96,498	18,335
2009년	1,105,053	1,214,853	1,112,790	10,223	91,840	7,738
2008년	1,115,569	1,246,503	1,148,781	13,332	84,390	33,212

### □ 예산현액

- 2009년 대비하여 12.83%(141,752백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증가율인 0.94%(10,516백만원) 보다 13.77%(152,268백만원)가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세 7,768백만원 증가, 보조금 등 19,905백만원, 세외수입 129,61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참조)

### □ 수납율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이 연도별로 2010년 89.58%, 2009년 91.06%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하락하여 수납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3) 연도별 지방세 초과세입 현황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기타
2010년	12,122	1,745	4,835	-	-	2,584	2,958
2009년	13,633	4,658	3,169	3,576	-	2,006	224
2008년	17,979	7,379	2,148	2,601	12	1,950	3,889

#### □ 검사분석

○ 초과세입은 예산현액 대 수납액과의 차이로서 2010년 지방세 초과세입은 12,122백만원으로 2009년 대비하여 11.09%(1,511백만원)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의 원인은 주민세 및 기타(재산세 등) 목표대비 수납액 부족입니다.

### (4) 연도별 세외수입중 초과수납 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010년	△3,692	65	△3,757
2009년	731	△1,241	1,972
2008년	7,939	5,889	2,050

#### □ 검사분석

○ 2010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5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757백만원 감소한 총 3,69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5) 지방세별 미수납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	지난연도수입
2010년	37,924	1,060	2,399	5,691	5,442	1,358	-	21,974
2009년	40,783	9,604	2,654	5,872	-	1,302	35	21,316
2008년	37,107	5,321	2,896	6,033	-	1,492	105	21,260

## □ 검사분석

○ 2010년 미수납액은 현년도 15,950백만원으로 2009년 미수납액 현년도 19,467백만원에 비해 18.1% 감소한 반면, 2010년도 지난연도수입 21,974백만원은 2009년 지난연도수입 21,316백만원보다 3% 증가하여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6) 세외수입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이자·부담금 및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2010년	58,574	39	190	0	0	11,759	46,586
2009년	51,057	111	174	59	0	6,381	44,332
2008년	47,283	129	275	8	0	7,816	39,055

## □ 검사분석

○ 2010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09년 미수납액 대비 14.73%(7,51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연도 미수납액(46,586백만원)이 79.54%를 차지하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축소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7)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2010년	96,498	-	2,092	6,386	48,483	20,263	19,274
2009년	91,840	-	1,971	14,998	70,823	2,635	1,413
2008년	84,390	-	2,715	20,177	33,593	27,594	311

## □ 검사분석

○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5.08%(4,65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미수납액의 50.25%(48,483백만원)가 고질적 체납으로 고질적 체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순수세입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수입 (①+②)-(③+④)
2010년	293,190	252,946	116,868	35	429,233
2009년	286,932	386,984	173,092	0	500,824
2008년	285,269	454,268	178,170	30,615	530,752

### □ 감사분석

○ 201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46,136백만원으로 2009년 (673,916백만원) 대비하여 18.96%(127,780백만원)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이 116,903백만원으로 2009년도 173,092백만원에 대비하여 32.47%(56,189백만원) 감소하였고, 2010년 순수 수입이 429,233백만원으로 2009년 순수수입 500,824백만원 보다 14.30%(71,59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9) 연도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09년			비 고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 계	537,706	546,136	101.6	659,553	673,916	102.2		
지방세 소계	281,068	293,190	104.3	273,300	286,932	105.0		
지방세	주민세	2,830	4,574	161.6	59,000	63,658	107.9	
	재산세	52,530	56,551	107.7	51,000	53,954	105.8	
	자동차세	40,678	45,513	111.9	39,000	42,169	108.1	
	도축세	2,410	2,540	105.4	2,300	2,332	101.4	
	담배소비세	45,200	44,953	99.5	43,000	46,576	108.3	
	주행세	27,990	27,891	99.6	30,000	28,635	95.5	
	지방소득세	64,570	63,673	98.6	0	0	0	
	도시계획세	36,974	39,558	107.0	35,800	37,806	105.6	
	사업소세	0	0	0	4,900	5,071	103.5	
지남연도수입	7,886	7,937	100.7	8,300	6,731	81.1		
세외수입 소계	256,638	252,946	98.6	386,253	386,984	100.2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201	2,052	93.2	2,299	2,078	90.4	
	사용료수입	8,205	8,062	98.3	8,010	8,512	106.3	
	수수료수입	14,800	14,734	99.6	14,751	14,326	97.1	
	사업수입	2,703	2,854	105.6	3,012	3,001	99.6	

징수교부금	7,247	7,344	101.3	8,040	7,578	94.3	
이자수입	7,064	7,235	102.4	10,084	9,461	93.8	
재산매각수입	0	0	0	0	0	0	
순세계잉여금	69,911	69,911	100	151,690	151,779	100.1	
이월금	134,512	124,468	92.5	177,435	177,409	100	
전입금	35	35	100	275	0	0	
융자금	3	3	100	10	0	0	
부담금수입	5,145	5,109	99.3	6,026	4,425	73.4	
잡수입	3,450	7,800	226.1	3,347	5,833	174.3	
지난연도수입	1,362	3,339	245.1	1,274	2,582	202.7	

## □ 검사분석

○ 2010년도 수납율이 101.6%로 2009년도 수납율 102.2%, 2008년 수납율 103.6% 보다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금액은 127,78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0년 104.3%로 2009년 105% 대비하여 수납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6,25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 98.6%로 2009년 100.2% 대비하여 수납율도 감소하고, 금액 또한 134,03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10)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09년			비 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b>합 계</b>	<b>660,276</b>	<b>546,136</b>	<b>82.7</b>	<b>775,980</b>	<b>673,916</b>	<b>86.8</b>		
<b>지방세소계</b>	<b>347,422</b>	<b>293,190</b>	<b>84.4</b>	<b>337,681</b>	<b>286,932</b>	<b>85.0</b>		
지 방 세	주민세	6,415	4,574	71.3	75,778	63,658	84.0	
	재산세	59,025	56,551	95.8	56,608	53,954	95.3	
	자동차세	51,318	45,513	88.7	48,176	42,169	87.5	
	도축세	2,540	2,540	100.0	2,332	2,332	100.0	
	담배소비세	44,953	44,953	100.0	46,576	46,576	100.0	
	주행세	27,891	27,891	100.0	28,635	28,635	100.0	
	지방소득세	73,441	63,673	86.7	0	0	0	
	도시계획세	40,957	39,558	96.6	39,109	37,806	96.0	
	사업소세	0	0	0	5,108	5,071	98.1	
지난연도수입	40,882	7,937	19.4	35,359	6,731	19.0		
<b>세외수입소계</b>	<b>312,854</b>	<b>252,946</b>	<b>80.9</b>	<b>438,299</b>	<b>386,984</b>	<b>88.3</b>		
세 외 수	재산임대수입	2,090	2,052	98.2	2,189	2,078	94.9	
	사용료수입	8,253	8,063	97.7	8,688	8,512	98.0	
	수수료수입	14,735	14,735	100.0	14,384	14,326	99.6	
	사업수입	2,855	2,855	100.0	3,001	3,001	100.0	

입	징수교부금	7,344	7,344	100.0	7,578	7,578	100.0	
	이자수입	7,239	7,236	99.9	9,464	9,461	100.0	
	재산매각수입	0	0	0	0	0	0	
	순세계잉여금	69,911	69,911	100.0	151,779	151,779	100.0	
	이월금	124,468	124,468	100.0	177,409	177,409	100.0	
	전입금	35	35	100.0	0	0	0	
	융자금	0	0	0	0	0	0	
	부담금수입	5,109	5,109	100.0	4,497	4,425	98.4	
	잡수입	19,559	7,800	39.9	12,140	5,833	48.0	
	지난년도수입	51,256	3,338	6.52	47,170	2,582	5.5	

## □ 검사분석

○ 2010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2.7%로 2009년 86.8%, 2008년 88.5% 2개년 대비 감소 추세이며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비율은 52.6% 대비 47.4%로 2009년 43.5% 대비 56.56%에 비하여 지방세의 의존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나. 세출결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검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도별 세출 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 용 액		불용 비율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잔액	시비 잔액	
2010년	963,301	800,988	109,072	17,758	1,598	89,716	3,292	49,949	5.53
2009년	1,105,053	918,411	126,868	17,813	3,080	105,975	7,600	52,174	5.4
2008년	1,115,569	819,681	173,092	17,230	7,797	148,065	4,318	118,478	13.1

## □ 검사분석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1%에 해당하는 800,98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09,072백만원(예산현액대비 11.3%)의 이월액과 53,24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53%)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2009년 59,77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4%)보다 0.13% 증가했으나 금액은 6,533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월액 총 108건에 대한 사업건별로 확인한 결과 명시이월 50건, 사고이월 18건, 계속비이월 40건입니다.

## (2) 기능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용액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b>합 계</b>	<b>963,301</b>	<b>800,988</b>	<b>109,072</b>	<b>17,758</b>	<b>1,598</b>	<b>89,716</b>	<b>53,241</b>
일반공공행정	59,216	51,123	3,383	3,310	73	0	4,710
공공질서및안전	13,118	7,148	1,140	1,140	0	0	4,830
교육	15,261	14,085	0	0	0	0	1,176
문화및관광	112,354	86,370	17,734	1,623	189	15,922	8,250
환경보호	66,788	58,061	7,288	0	0	7,288	1,439
사회복지	274,505	265,418	2,271	2,198	73	0	6,816
보건	13,875	13,088	0	0	0	0	787
농림해양수산	14,344	7,768	6,008	0	8	6,000	568
산업·중소기업	28,830	24,536	2,940	2,940	0	0	1,354
수송및교통	192,621	121,072	58,505	2,372	725	55,408	13,044
국토및지역개발	36,115	24,319	9,803	4,175	530	5,098	1,993
예비비	1,015	0	0	0	0	0	1,015
기타	135,259	128,000	0	0	0	0	7,259

## 2.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 가. 세입총괄

#### (1) 총괄 검사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3,450백만원이며, 수납총액은 476,602백만원으로 회계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불 납 결손액	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	453,450	513,097	476,602	36,495	793	35,702
공기업특별회계	131,705	166,359	161,276	5,083	53	5,030
상수도	54,295	86,881	85,446	1,435	53	1,382
하수도	77,410	79,478	75,830	3,648	0	3,648
기타특별회계	321,745	346,738	315,326	31,412	740	30,672
공유재산관리	30,162	37,127	36,633	494	35	459
주택사업	35	35	35	0	0	
의료급여기금	4,232	4,469	4,382	87	0	87
기초생활수급자등생 활안정자금	1,115	1,801	1,431	370	9	361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1,539	1,559	1,559	0	0	0
도시재정비촉진	5,288	6,502	6,502	0	0	0
도시개발	32,832	25,532	24,639	893	0	893
기반시설	1,131	1,773	1,532	241	0	241
교통사업	55,601	80,345	51,018	29,327	696	28,631
도시철도건설	189,810	187,595	187,595	0	0	0

#### (2) 연도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유예	거소불명	무채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 재산압류중	기타
2010년	35,702	0	137	3,572	5,469	20,438	6,086
2009년	29,412	20	94	150	2,025	1,006	26,117
2008년	31,473	0	398	23,353	7,236	235	251

※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미포함 된 다음연도 이월액

## 나. 세출총괄

-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267,0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53,450백만원의 58.90%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용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합 계	453,450	267,066	10,648	3,048	1,357	6,243	175,736
공기업특별회계	131,705	90,119	2,013	1,422	256	335	39,573
상수도	54,295	49,482	602	346	256	0	4,211
하수도	77,410	40,637	1,411	1,076	0	335	35,362
기타특별회계	321,745	176,947	8,635	1,626	1,101	5,908	136,163
공유재산관리	30,162	185	0				29,977
주택사업	35	35	0				0
의료급여기금	4,232	4,016					216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	1,115	155					960
장기미집행도시계 획시설대지보상	1,539	430					1,109
도시재정비촉진	5,288	259	153		153		4,876
도시개발	32,832	4,615					28,217
기반시설	1,131	1					1,130
교통사업	55,601	35,623	8,482	1,626	948	5,908	11,496
도시철도건설사업	189,810	131,628					58,182

## VI. 예비비 결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793백만원으로 이중 4,53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 용 액	비 고
2010년	6,793	4,532	2,261	
2009년	1,498	1,494	4	
2008년	18	18	0	

※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

#### □ 검사분석

- 2009년에는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특별위로금」 1건에 30백만원 등 9건에 1,494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나, 2010년에는 1.4폭설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지원비 18백만원, 9.21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침수주택 긴급 복구 지원 428백만원 등 14건 4,53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2010년 예비비 불용액 증가 사유는 9.21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원에 대하여 예비비로 선지출 하였으나, 2010년 3회 추경에 국·도비 지원으로 지출재원 변경 된 사항입니다.

## VII. 기금결산

### 【 2010년도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당해년도 사용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국비 보조금	융자 회수금	예탁금 상환금	이자 수입	기타 잡수입		
<b>합 계</b>	<b>71,040</b>	<b>5,741</b>	<b>2,158</b>	<b>80</b>	<b>2</b>	<b>0</b>	<b>3,033</b>	<b>468</b>	<b>4,212</b>	<b>72,569</b>
소규모유통업육성 기금	1,072	46	0	0	0	0	46	0	22	1,096
중소기업육성기금	17,819	1,808	1,000	0	0	0	808	0	0	19,627
노인복지기금	5,130	224	0	7	0	0	217	0	175	5,179
보훈기금	1,106	47	0	0	0	0	47	0	40	1,113
기초생활보장기금	2,850	309	0	0	2	0	123	184	223	2,936
여성발전기금	1,985	600	500	0	0	0	100	0	58	2,527
아동복지기금	1,137	128	0	0	0	0	48	80	113	1,152
문화예술발전기금	4,612	301	100	0	0	0	201	0	161	4,752
식품진흥기금	1,035	311	0	61	0	0	46	204	250	1,096
옥외광고정비기금	-	13	10	3	0	0	0	0	0	13
환경보전기금	959	143	100	0	0	0	43	0	44	1,058
재난관리기금	15,003	717	100	9	0	0	608	0	1,079	14,641
체육진흥기금	4,618	300	100	0	0	0	200	0	135	4,78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659	359	248	0	0	0	111	0	1,912	2,106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0,055	435	0	0	0	0	435	0	0	10,490

## 【기금관련 주요 수입지출액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지출액
2010년	2,158	3,033	468	4,212
2009년	1,901	3,041	437	2,033
증감액	257	8	31	2,179
증감율	13.5%	△0.2%	7.1%	107.1%

※ 보조금, 용자금회수 (82백만원) 미포함

### □ 검사분석

- 현재 설치되어 있는 15개 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72,569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기금 조성액(71,040백만원) 대비 2.16%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출연금 2,158백만원과 이자수입 3,033백만원, 보조금 및 용자회수 82백만원 기타 잡수입 468백만원 등을 포함한 총 5,74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212백만원입니다.

## VIII. 채권 결산

### 1. 채권 총괄 현황

2010년도의 채권 증감에 의한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채 권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12,360	3,153	1,660	13,853
일반회계		10,809	2,448	1,062	12,195
특별회계	소 계	1,411	480	596	1,295
	의료보호기금운영	80	43	35	8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기금	1,331	437	561	1207
기초생활보장기금		140	225	2	363

### 2. 연도별 채권 현황 분석

#### 【 연 도 별 채 권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2010년	12,360	3,153	1,660	13,853
2009년	11,887	2,590	2,117	12,360
2008년	10,342	3,121	1,576	11,887

#### □ 검사분석

- 2010년말 현재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533백만원, 융자금채권 13,235백만원, 기타채권 85백만원입니다.

## Ⅸ. 채무 결산

### 1. 채무 총괄 결산

2010년도의 채무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채 무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31,470	19,000	17,892	0	132,578
일반회계	113,950	19,000	15,750	0	117,200
특별회계	17,520	0	2,142	0	15,378
공기업	7,520	0	2,142	0	5,378
기 타	10,000	0	0	0	10,000

#### □ 검사분석

- 2010년 채무총괄 현황은 전년도보다 1,108백만원이 증가한 132,57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 【 연 도 별 채 무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10년	131,470	19,000	17,892	0	132,578
2009년	113,840	34,600	16,970	0	131,470
2008년	202,194	238,884	297,042	0	144,036

#### □ 검사분석

- 2010년도 발생한 채무내용은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9,000백만원,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 10,000백만원 총 2건 19,000백만원 입니다.

## X.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010년도의 공유재산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유 재산 증 감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	감	
합 계	6,016,046	335,550	66,918	6,284,678
행정자산	5,832,903	334,830	58,371	6,109,362
공공용재산	1,396,580	304,969	46,147	1,655,402
공 용 재 산	4,257,298	23,817	6,287	4,274,828
기업용재산	179,025	6,044	5,937	179,132
보 존 재 산	0	0	0	0
잡 종 재 산	183,143	720	8,547	175,316

#### □ 검사분석

- 2010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68,632백만원이 증가한 6,284,678백만원입니다

## XI. 물품증감 및 현재액

2010년도의 물품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물 품 증 감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수 량	918	268	47	1,139
금 액	10,580	1,020	279	11,321

#### □ 검사분석

- 2010년말 물품은 전년도보다 741백만원이 증가한 11,321백만원입니다.
- 2010년도 물품 증가 사유는 '화물 트럭 구입'등 정수물품의 신규 취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 개선 권고사항(세입분야)



## XII. 개선 및 권고사항

### 1. 세입분야

오늘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갈수록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증대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세입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수납액의 차이 및 최소화 방안

##### □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비 율		비 고
				C/A	C/B	
합 계	1,416,751	1,608,874	1,458,238	102.93%	90.64%	
일반회계	963,301	1,095,777	981,636	101.90%	89.58%	
공기업특별회계	131,705	166,359	161,276	122.45%	96.94%	
기타특별회계	321,745	346,738	315,326	98.00%	90.94%	

##### □ 문제점

- 수납율을 높여 안정적 세수 확보와 체납징수비용을 줄여야 함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90.6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초과징수액이 41,487백만원이 발생한 바 예산수립 단계에서 부터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 개선 및 권고 사항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집행하는데 기초가 되므로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재원 확충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액 산정이 요구됩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을 높이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체납액

관리 등에 투입된 징수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며 체납 징수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나.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 □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A)	징수액(B)	결손액(C)	체납액(D=A-B-C)	비고
세목별						
총 계		631,774	556,695	21,668	53,411	
도	소 계	284,352	263,505	5,360	15,487	
	취득세	79,299	76,869	294	2,136	
	등록세	99,289	97,739	729	821	
	면허세	1,379	1,313	1	65	
	레저세	8,647	8,647	0	0	
	공동시설세	12,172	11,513	29	630	
	지역개발세	55	50	5	0	
	지방교육세	68,256	65,714	191	2,351	
	과년도	15,255	1,660	4,111	9,484	
	시	소 계	347,422	293,190	16,308	37,924
지방소득세		79,838	68,230	5,106	6,502	
재산세		59,025	56,551	76	2,398	
자동차세		51,318	45,512	115	5,691	
주행세		27,891	27,891	0	0	
도축세		2,540	2,540	0	0	
담배소비세		44,953	44,953	0	0	
도시계획세		40,957	39,558	41	1,358	
사업소세		18	18	0	0	
과년도		40,882	7,937	10,970	21,975	

### □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

(단위:건,백만원)

구분	공매예고		공매처분		징수실적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129	9,610	154	4,947	133	549	
부동산	311	3,741	37	1,137	28	363	
차량	818	5,869	117	3,810	105	186	

## □ 문제점

- 체납액 중 정리되지 않고 차기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53,411백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8.4%나 되고 이는 차기년도에 과년도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 표에서와 같이 과년도 분은 징수율이 도세의 경우는 10.9%, 시세의 경우는 19.4%로 매우 낮습니다.
- 또한 체납 정리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1,668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악성 체납액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납세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게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액 발생은 납기내 징수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납기내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현금 징수비율이 낮아지고 결손 처분될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게 하는 만큼 납기내 완납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겠으며 한 예로, 체납 징수 실적이 높은 직원에게는 징수 포상 또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세의 특성상 소액체납의 경우 전체적인 체납중 금액은 작지만 그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방치할 경우 체납 처분에 과중한 업무가 발생되므로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추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세금이므로 체납이 된 경우 바로 압류할 대상물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목에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시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조세가 일실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고액, 상습체납자를 별도 관리하여 상시적인 감시와 추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시에 체납자인 민원인에게는 체납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조회로 체납 고지서를 교부하여 독려를 하고, 압류된 물건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공매 처분함으로써 체납된 세액을 신속히 회수하여 조세 일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다.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 철저

### □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비 과 세				감 면				비고
	신청 확인건수	신청 확인세액	추징건수	추징세액	신청 확인건수	신청 확인세액	추징건수	추징세액	
유형별	85,695	48,935	29	177	73,989	60,948	669	1,664	
종교단체	2,905	3,002	25	123	37	37	0	0	
비영리법인	491	3,893	2	30	405	673	0	0	
아파트형공장	0	0	0	0	3,535	1,208	333	1262	
장애인 등	0	0	0	0	16,818	2,936	287	64	
기 타	82,299	42,040	2	24	53,194	56,094	49	338	
세목별	85,695	48,935	29	177	73,989	60,948	669	1,664	
도세 계	877	6,472	25	160	42,918	56,672	446	1,651	
취득세	759	4,557	15	95	21,437	28,281	230	819	
등록세	118	1,915	10	65	21,481	28,391	216	832	
시세 계	84,818	42,463	4	17	31,071	4,276	223	13	
주민세	8,880	85	0	0	0	0	0	0	
재산세	18,768	39,876	4	17	14,607	2,245	159	6	
자동차세	57,162	2,501	0	0	16,464	2,031	64	7	
재산분주민세	8	1	0	0	0	0	0	0	

### □ 문제점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은 법률이나 각종 조례 등에 의거 적용 되고 있는 바, 법적용 예규 및 해석사례 등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비과세 및 감면의 종류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종 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비과세 및 감면이 법적용에 있어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평과세 차원과 조세정의 실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기적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정기간 동안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비과세 및 감면 등은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국세청 및 관련부처와의 업무 제휴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라. 납세고지서 원활한 송부 및 전자수납제도 활성화 방안

### □ 연도별 전자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계	전자수납	기타	전자수납율	비고
2010	합계	556,695	83,354	473,341	15.0%	
	도세	263,505	29,943	233,562	11.4%	
	시세	293,190	53,411	239,779	18.2%	
2009	합계	603,813	70,254	533,559	11.6%	
	도세	316,881	27,088	289,793	8.5%	
	시세	286,932	43,166	243,766	15.0%	

## □ 2010년 지방세 징수 현황(전자수납)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액	전자 수납액	전자 수납비율 (%)	징수방법					비고	
				위택스	폰뱅킹	자동 이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카드		
<b>합 계</b>	<b>556,695</b>	<b>83,354</b>	<b>15</b>	<b>65,783</b>	<b>353</b>	<b>6,028</b>	<b>6</b>	<b>11,184</b>		
도 세	<b>소계</b>	<b>263,505</b>	<b>29,943</b>	<b>11.4</b>	<b>25,358</b>	<b>68</b>	<b>1,149</b>	<b>2</b>	<b>3,366</b>	
	취득세	76,869	13,004	16.9	11,645	0	0	0	1,359	
	등록세	97,739	3,097	3.2	3,059	0	0	0	38	
	면허세	1,313	227	17.3	207	0	20	0	0	
	레저세	8,647	1,546	17.3	1,546	0	0	0	0	
	공동시설세	11,513	3,390	29.4	2,368	18	265	1	738	
	지역개발세	50	10	20.0	10	0	0	0	0	
	지방교육세	65,714	8,669	13.2	6,523	50	864	1	1,231	
	과년도	1,660	0	0	0	0	0	0	0	
	시 세	<b>소계</b>	<b>293,190</b>	<b>53,411</b>	<b>18.2</b>	<b>40,425</b>	<b>285</b>	<b>4,879</b>	<b>4</b>	<b>7,818</b>
주민세		4,569	1,156	25.3	1,042	4	65	0	45	
지방소득세		63,661	9,864	15.5	8,429	0	0	0	1,435	
재산세		56,551	15,868	28.1	11,786	95	1,689	2	2,296	
자동차세		45,512	14,015	30.8	9,598	102	1,757	1	2,557	
도축세		2,540	0	0	0	0	0	0	0	
주행세		27,891	1,517	0	1,517	0	0	0	0	
담배소비세		44,953	0	0	0	0	0	0	0	
도시계획세		39,558	10,977	27.7	8,039	84	1,368	1	1,485	
사업소세		18	14	77.8	14	0	0	0	0	
과년도	7,937	0	0	0	0	0	0	0		

## □ 문제점

- 전자수납제도에는 위텍스 납부, 인터넷 및 폰뱅킹, 자동이체 등이 있는데, 부과과세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일부 주민세 등)에 비해 신고 납세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일부 주민세 등)이 전자수납 비율을 높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자수납 비율이 높은 세목이 납부율도 높은 만큼 징수 비용을 줄이고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 수납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전자수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손쉽게 전자수납 방법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및 폰뱅킹을 등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고지분 국세에서도 최근 도입하여 그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자 수납자에 대한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으로 전자수납 비율을 제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업료 등 학교에 납부하는 모든 공납금이 자동이체로 사용되고 있어 수납율을 높이고 수납비용을 줄이고 있음에 주목하고 같은 전자수납 방법 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 □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비 고
자주 재원	소 계(①)	546,136	673,915	739,537	
	지방세	293,190	286,932	285,269	
	세외수입	252,946	386,983	454,268	
의존 재원	소 계	435,499	438,872	409,243	
	지방교부세	97,810	91,150	98,92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3,890	69,952	77,021	
	국고보조금 등	234,799	253,170	198,19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000	24,600	35,100	
총 계(②)		981,635	1,112,790	1,148,780	
재정자립도(①/②)		55.6%	60.6%	64.4%	

## □ 문제점

-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 국고보조금 등 증가는 재정자립도를 낮게 하는데 비해 지방채 발행금액 감소와 지방세 수입의 완만한 증가는 긍정적인 평가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재정자립도가 상승하기 보다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지방세 수입은 각종 법률 등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지방세 감면 또한 기득권화가 만성화되어 그 규모가 증대하고 있어 지방재정 약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각종 제약조건으로 인해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분야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 조기 시행(지방소비세 세율 향상 : 부가가치세 5%에서 10%인상), 신 세원의 발굴 위해 법제정 등의 적극적 건의, 세외수입 증대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민간경영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체납세 징수 업무의 과감한 민간 전문업체 위탁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니다.
-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속적 수직적관계가 아니라 협조적 수평적 관계 설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은 지양하고 지역적 불균형 완화, 행정서비스의 표준화 등 개입의 한계를 통해 폭 넓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반기(1기분 : 06/16~06/30, 2기분 : 12/16~12/31)에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연초에 연간 세액으로 수납할 수 있고 전체 세액에 10%를 공제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절세할 수 있음을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을 통해 수납율도 높이고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 바. 민간용자금채권의 관리 철저

### □ 현 황

(단위 : 원)

회계별	2010년 결산서상 민간용자금채권 당해 현재액	지방재정관리시스 템(e-호조)상 당해 현재액	결산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상 차액	일치여부	비고
총계	13,236,098,090	13,384,960,050	△148,861,960		
일반회계	11,662,961,400	11,662,961,400	-	일치	
기타특별회계	1,210,136,690	1,358,998,650	△148,861,960	불일치	· 기초생활보장수 급자등 생활안정 · 의료급여
기금	363,000,000	363,000,000	-	일치	

### □ 문제점

- 위 도표에서 보듯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서상 민간용자금채권 합계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상의 민간용자금채권 합계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용자금채권 결산의 기초 이월금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원인 때문이고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수인계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계속해서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용자금채권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상 민간용자금채권 결산액이 다른 상태에서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고 기존의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되어 그대로 가다보면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은 명백한 사실인 바, 지금이라도 차이 원인을 규명하든지 차이 원인을 알 수 없을 시 결손처분하더라도 반드시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산서상 민간용자금채권의 합계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상 민간용자금채권의 결산액을 일치시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사항(세출분야)



## 2. 세출분야

### 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급여 산정 문제

#### □ 현황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가)	지출원인행위액(나)	지출액(다)	이월액(라)	집행잔액(마)=(가)-(다)-(라)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846,873,000	844,152,650	844,152,650	-	2,720,350	
도로과	도로	자연재난관리	배상금등	25,402,000	25,401,870	25,401,870	-	13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청소과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배상금등	376,354,000	375,077,570	375,077,570	-	1,276,430	재활용 선별원(퇴직자) 임금 등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공원사업소	지역및도시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배상금등	324,304,000	322,861,620	322,861,620	-	1,442,380	공원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
원미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배상금등	53,196,000	53,195,920	53,195,920	-	8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소사구건설과	도로	도로유지 보수관리	배상금등	14,438,000	14,437,030	14,437,030	-	97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포장	배상금등	53,179,000	53,178,640	53,178,640	-	36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 □ 문제점

-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의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송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근속연수에 비례한 가산금을 산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소송이란 항상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로 원고로든 피고로든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금이 외에 이자부분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담당자는 항상 이점을 주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나.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일관성 있는 분류

### □ 현황

#### 【2010년도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38,379,547,888	1,626,206,130	1,100,594,060	5,907,540,070	38,642,356,300	91,102,851,328
공유재산관리	36,447,594,800	-	-	-	-	36,447,594,800
주택사업	-	-	-	-	-	-
의료급여기금	366,793,488	-	-	-	203,417,580	163,375,9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기금운영	1,275,171,306	-	-	-	-	1,275,171,3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대지보상임시	1,129,122,010	-	-	-	-	1,129,122,010
도시재정비촉진	6,242,921,770	-	152,565,000	-	-	6,090,356,770
도시개발	20,024,197,330	-	-	-	778,000,000	19,246,197,330
기반시설	1,531,850,170	-	-	-	-	1,531,850,170
교통사업	15,394,977,304	1,626,206,130	948,029,060	5,907,540,070	23,338,140	6,889,863,904
도시철도건설사업	55,966,919,710	-	-	-	37,637,600,580	18,329,319,130

#### 【2009년도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15,340,556,634	13,564,041,030	4,762,310,000	9,353,133,700	55,211,070	87,605,860,834
공유재산관리	18,616,181,070	-	-	-	-	18,616,181,070
주택사업	35,599,668	-	-	-	-	35,599,668
의료급여기금	467,398,098	-	-	-	-	467,398,09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08,633,206	-	-	-	-	1,108,633,2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	1,432,820,280	-	-	-	-	1,432,820,280
도시재정비촉진	2,099,217,190	138,000,000	-	-	-	1,961,217,190
도시개발	22,656,529,600	1,620,000,000	4,762,310,000	-	-	16,274,219,600
기반시설	1,252,760,730	-	-	-	-	1,252,760,730
교통사업	27,247,178,552	11,806,041,030	-	9,353,133,700	55,211,070	6,032,792,752
도시철도건설사업	40,424,238,240	-	-	-	-	40,424,238,240

## □ 문제점

- 2009년도와 2010년도 이월내역에서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연도 이월 금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엄연히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것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타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구분 표시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 개별 부서에 걸맞은 예산편성

### □ 현황

- 기업지원과의 예산현액은 27,535,533,000원으로 지출액은 26,260,819,570원이었으며, 이 중 문화재 예산현액은 56,184,000원, 지출액은 54,330,130원이었습니다.

(단위 : 원)

기업지원과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집행잔액
문화재	56,184,000	56,184,000	54,330,130	54,330,130	1,853,870
전통문화 보존 및 가치재창출	56,184,000	56,184,000	54,330,130	54,330,130	1,853,870
전통문화 보존전승 및 시설확충	56,184,000	56,184,000	54,330,130	54,330,130	1,853,870
공예 체험 교육관 운영	36,184,000	36,184,000	34,730,130	34,730,130	1,453,870
민간이전	36,184,000	36,184,000	34,730,130	34,730,130	1,453,870
민간경상보조	36,184,000	36,184,000	34,730,130	34,730,130	1,453,870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지원	20,000,000	20,000,000	19,600,000	19,600,000	400,000
민간이전	20,000,000	20,000,000	19,600,000	19,600,000	400,000
민간경상보조	20,000,000	20,000,000	19,600,000	19,600,000	400,000

## □ 문제점

- 기업수가 상당수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재정 자립도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 더욱 더 매진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부천시로서는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문화재'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기업지원과의 역할과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서 언급했듯이 큰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부천시로서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문화재'라는 예산은 문화예술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으므로 문화예술과 내지는 문화콘텐츠진흥과로 이관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라. 사업명에 부합하는 업체선정

### □ 현황

- 환경보전과의 예산현액은 13,923,665,000원으로 지출액은 13,833,596,700원이었으며 질소산화물 저감추진사업의 예산현액은 121,800,000원으로 집행액은 121,800,000원이었습니다.

(단위 : 원)

월 일	지급 명령 번호	예산과목		적요	채주	자금배정액	지급액	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2010-06-011		2008073000604281054 질소산화물저감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자금배정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지급		9,800,000		9,800,000
2010-06-11	7877	2008073000604281054 질소산화물저감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자금배정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지급	기독교대한감리회 부천시제일교회외 1		9,800,000	0

				일계		9,800,000	9,800,000	
2010-06-30		2008073000604281054 질소산화물저감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자금배정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지급		30,800,000		30,800,000
2010-06-30	9168	2008073000604281054 질소산화물저감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비 지급	대은목욕탕 외 3		30,800,000	
				일계		30,800,000	30,800,000	
				월계		40,600,000	40,600,000	

## □ 문제점

- 질소산화물 저감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지급에 있어서 목욕탕은 중소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교회는 일반적인 개념의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원래 취지도표상의 채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적요란을 정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명시한대로 중소기업 대상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과 그에 부합하는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마. 예비비 지출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적절성 제고

### □ 현황

-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808,026,000원으로서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행사장 구제역 방역 사업외 14건 6,793,13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531,994,55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261,140,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가)	지출원인행위액(나)	지출액(다)	이월액(라)	집행잔액(마)= (가)-(다)-(라)	예비비지출사유
조직	부분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6,793,135,000	6,484,414,550	4,531,994,550	-	2,261,140,450	
녹색농정과	농업·농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재료비	5,676,000	5,676,000	5,676,000	-	-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행사장 구제역 방역 소독물품 구입
문화콘텐츠진흥과	문화예술	영상문화단지 시설유지 및 정비	공공운영비	3,008,040,000	3,008,040,000	3,008,040,000	-	-	서커스상설공연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공탁금 납부
문화콘텐츠진흥과	문화예술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6,265,000	36,264,900	36,264,900	-	100	서커스 상설공연장 공사대금 항소심 인지액
도로과	도로	자연재난관리	배상금등	25,402,000	25,401,870	25,401,870	-	13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민방위	자연재난관리	민간인재해 보상금	18,000,000	18,000,000	18,000,000	-	-	1.4일 폭설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지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민방위	자연재난관리	민간인재해 보상금	981,000,000	981,000,000	428,580,000	-	552,420,000	9.21일 발생한 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긴급 복구지원에 따른 지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민방위	자연재난관리	민간인재해 보상금	1,706,000,000	1,400,000,000	-	-	1,706,000,000	9.21일 집중호우 침수주택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 지출
행정지원과	기타	인건비	보수	54,348,000	54,348,000	54,348,000	-	-	예상하지 못한 명예 퇴직자 발생으로 퇴직수당 예비비로 지출
행정지원과	기타	인건비	보수	136,933,000	136,933,000	136,933,000	-	-	당초 예상하지 못한 명예퇴직자 발생으로 예산초과분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청소과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배상금등	376,354,000	375,077,570	375,077,570	-	1,276,430	재활용 선별원(퇴직자) 임금 등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공원사업소	지역및도시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배상금등	324,304,000	322,861,620	322,861,620	-	1,442,380	공원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
원미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배상금등	53,196,000	53,195,920	53,195,920	-	8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소사구건설과	도로	도로유지 보수관리	배상금등	14,438,000	14,437,030	14,437,030	-	97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포장	배상금등	53,179,000	53,178,640	53,178,640	-	36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 □ 문제점

- 위 도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나타낸 것으로서 예비비란 표현 그대로 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9.21일 발생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결정을 하였고 지출원인행위도 있었으나 도표상에는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선 지출하고 이후에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한 결과로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출원인행위’라는 용어는 예산회계에서 쓰는 표현으로 당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은 발생했지만 실제 당기 회계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차기 회계연도에 지출이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바, 향후 이런 상황이 재난안전관리과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뿐만 아니라 개별 부서 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가 적절한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예산집행율의 감소(예비비의 증가)

### □ 현황

#### 【 2009년 및 2010년 세출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율(B/A)	
	당해년도	전년도	증감	당해년도	전년도	증감	당해년도	전년도
합계	1,416,751	1,566,691	△149,940	1,068,054	1,227,848	△159,794	75%	78%
일반회계	963,301	1,105,053	△141,752	800,988	918,411	△117,423	83%	83%
특별회계	453,450	461,638	△8,188	267,066	309,437	△42,371	59%	67%
공기업특별회계	131,705	127,823	3,882	90,119	91,591	△1,472	68%	72%
기타특별회계	321,745	333,815	△12,070	176,947	217,846	△40,899	55%	65%

**【 2010년 재원별 · 경제성질별 결산액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재원별	예산현액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결산액	증감	예산현액	결산액	증감	예산현액	결산액	증감
인건비	132,660	123,331	116,522	6,809	9,156	8,061	1,095	173	153	20
물건비	106,066	67,218	60,171	7,047	35,063	32,649	2,414	3,785	2,612	1,173
경상이전	460,960	442,283	423,832	18,451	1,625	1,557	68	17,052	15,709	1,343
자본지출	529,657	252,214	133,994	118,220	50,756	45,673	5,083	226,687	157,893	68,794
융자및출자	410	-	-	-	-	-	-	410	151	259
보전재원	27,892	25,750	15,750	10,000	2,142	2,142	-	-	-	-
내부거래	43,787	43,751	42,992	759	-	-	-	36	36	-
예비비및기타	115,320	8,754	7,727	1,027	32,964	37	32,927	73,602	392	73,210
<b>계</b>	<b>1,416,752</b>	<b>963,301</b>	<b>800,988</b>	<b>162,313</b>	<b>131,706</b>	<b>90,119</b>	<b>41,587</b>	<b>321,745</b>	<b>176,946</b>	<b>144,799</b>

**【 2009년 재원별 · 경제성질별 결산액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재원별	예산현액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결산액	증감	예산현액	결산액	증감	예산현액	결산액	증감
인건비	146,986	137,765	132,061	5,704	9,054	8,051	1,003	167	150	17
물건비	96,257	59,803	54,086	5,717	32,681	30,504	2,177	3,773	2,416	1,357
경상이전	453,127	416,904	397,172	19,732	19,829	19,656	173	16,394	15,461	933
자본지출	699,052	390,680	248,902	141,778	37,392	30,661	6,731	270,980	199,134	71,846
융자및출자	410	-	-	-	-	-	-	410	264	146
보전재원	16,970	14,270	14,270	-	2,700	2,700	-	-	-	-
내부거래	67,599	67,599	67,560	39	-	-	-	-	-	-
예비비및기타	86,291	18,033	4,361	13,672	26,167	20	26,147	42,091	422	41,669
<b>계</b>	<b>1,566,692</b>	<b>1,105,054</b>	<b>918,412</b>	<b>186,642</b>	<b>127,823</b>	<b>91,592</b>	<b>36,231</b>	<b>333,815</b>	<b>217,847</b>	<b>115,968</b>

**□ 문제점**

- 위 도표는 2009년 및 2010년 세출내역과 재원별 · 경제성질별 결산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2009년 및 2010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2009년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 집행율이 전체 78%였고 일반회계는 83%, 공기업특별회계는

72%, 기타특별회계는 65%였으며, 2010년은 전체 집행율이 75%였고 일반회계는 83%, 공기업특별회계는 68%, 기타특별회계는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전체 예산현액 139,940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예비비 및 기타는 29,029백만원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바, 예산회계에서 예비비의 증가로 인해 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예산 = 세출예산'의 관계로 볼 때 예산회계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수납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나 실정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말 그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비용이므로 전년 대비 세출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늘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바, 재원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 민간 위탁금의 관리

### □ 현황

(단위 : 원)

주민생활지원과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06,810,000	2,606,810,000	2,606,810,000	2,606,810,000	-
민간이전	2,606,810,000	2,606,810,000	2,606,810,000	2,606,810,000	-
민간위탁금	2,606,810,000	2,606,810,000	2,606,810,000	2,606,810,000	-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	1,732,000,000	1,732,000,000	1,685,167,630	1,685,167,630	46,832,370
민간이전	1,732,000,000	1,732,000,000	1,685,167,630	1,685,167,630	46,832,370
민간위탁금	1,732,000,000	1,732,000,000	1,685,167,630	1,685,167,630	46,832,370

## □ 문제점

- 위 도표는 부천시 가장 많이 편성하는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민간위탁금의 일부를 표시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 중 민간위탁금이 2009년에는 94,659백만원으로 6%, 2010년에는 93,708백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인건비성 비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위탁금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므로 향후 위탁금의 축소 내지는 사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아. 자전거 문화의 정착

### □ 현황

- 자전거 도로 : 40개소 / 167km
- 자전거 보관대 : 361개소 12,215면
- 공기 주입기 : 5개소
-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 25개 사랑회

### □ 문제점

- 부천시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 도로로서 총 연장이 167km에 이르며, 대부분이 보도폭이 협소한 곳에 시설되어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없이 시행한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예산 381백만원(중동대로 넘말사거리 ~ 신흥로 소방서사거리)을 2009년 11월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어 원상복구 함으로써 그 동안의 지출금액 33백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 자전거 관련 시설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시민의 의식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전거 이용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체증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시민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좁은 보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폭 넓게 강구하여야 할 것과,
-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또 다른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유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지원, 축제 등을 통한 자전거문화 활성화, 자전거 기증 운동 추진, 자전거이용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여 자전거 문화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야 하겠습니다.

## 자. 국·도비 지원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저조

### □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비율 (%)	비 고 (2011년도예산액)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	70	31	44.29	280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185	136	73.51	345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7종)	677	473	69.86	639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원미구)	75	6	8.00	93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소사구)	43	2	4.65	57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오정구)	40	5	12.50	53

## □ 문제점

-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포기자의 발생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사전에 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에 적정을 기해야겠으며,
-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현수막, 리플렛, 통반장 활용 등 직·간접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여야 하고,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수혜 대상이 되는 시민이 단 한사람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